

第114回(臨時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 8月 31日(金) 10時02分

場 所 小會議室

###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吳弼根議員 外 3人 發議) ..... 2面

(10時02分 開議)

○委員長 鄭泰淳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덥고 지루한 막바지 여름철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임시회의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를 하여 주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회 운영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뒤에서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黃義振 事務局長님과 事務局 職員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구성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첫번째로 상정하여 심사하는 안건은 우리 구의회의 상임위원회 관련조례로서 위원회 위원의 활동 임기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의장단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고, 위원수를 현행에 맞게 조정하는 안입니다. 현재의 위원의 임기는 제1대 의회 때 부터 실시해오던 것으로 전문성 확보 등에 따른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본 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은 지도 근 2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에 따른 업무를 파악하면서 한편으로는 의장

단을 보필하고 의원간에 대화와 협력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본 위원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간에 여러 부분들이 견해와 생각들이 달라 본 의원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주어진 직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慶洙 議事係長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張慶洙 議事係長 張慶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8월 23일 吳弼根議員 外 3인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이 2001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泰淳 張慶洙 議事係長!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

(案)(吳弼根議員 外 3人 發議)

(10時07分)

○委員長 鄭泰淳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吳弼根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弼根議員 吳弼根議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본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날로 대폭 증대되고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의안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전문분야별로 의안을 분담하여 예비심사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임기가 1년으로 짧게 규정되어 있어 위원별 소속 위원회의 적응기간을 거쳐 전문성을 띠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때쯤이면 임기가 도래하여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회 활동을 계속성 있게 보장해 주기 위하여 상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확대하고 위원 정수에 관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에 있어 궐원 발생에 따른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에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종로구 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吳弼根議員 外 3人)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鄭泰淳 吳弼根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蔣昭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1년 8월 23일자 吳弼根議員 외 3인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구의회에 두는 3개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9인으로 규정하고, 달리 단서규정을 두지 않아서 의원이 궐원이 생길 경우 위원회 정수가 즉시 조례 불일치 사례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과 상임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개요는 3개 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제2조의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안)과 제5조의 임기 연장하는 (안), 그 다음에 부칙에 임기 연장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규정입니다. 현행 규정은 운영위원회, 시민행정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각 9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궐원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조례 불일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단서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정수에 있어 원구성 후 궐원이 발생한 위원회는 보궐선거로 충원이 있기까지는 궐원을 제외하 나머지 위원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는 현행 상임위원회 임기가 1년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간으로 개정하는 (안)이고,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는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의 설치에 관련된 법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법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54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 정수가 41인 이상일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수를 5개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 정수가 31인 이상 40인 이하일 경우에는 4개 이내, 위원 정수가 13인 이상 30인 이하인 경우는 3개 이내, 11인 이하의 위원회를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금천구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용어에서 결원(闕員)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결원(闕員)과 결원(缺員)이 다른 내용은 의회대사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단순히 정원에서 사람이 빠져서 모자라는 표현이고, 결원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같이 회의체의 구성원이 사망 또는 사직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결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결 '결(闕)' 자를 써서 결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개정(안)입니다. 제2조는 개정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결원이 될 경우에 그 수에 맞춰서 8인으로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9인 이하로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과 같이 단서규정으로 개정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8인'으로 개정하는 경우에 정확한 개정은 되겠습니다마는 보충이 될 경우에 즉시 조례를 고쳐야 되어서 조례의 안정성이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9인 이하'로 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항상 9인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9인 이하로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안과 같이 단서규정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기 연장(안)은 현행 임기 1년으로 했을 때 장단점을 저 나름대로 살펴드렸습니다. 우선 1년으로 할 경우에는 장점은 위원장 담임 기회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 구정이나 구 관계공무원들을 두루 섭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 또 의장 영향력이 증대된다는 사항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의장이 의회를 통괄하는 데 상당히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제일 큰 단점이 잦은 선거에 따른 후유증으로 의회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하다는 그런 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위원회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사항과 서울시 23개 구 전체가 지금 2년 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회의나 이런 경우에 가면 타 시·구의회와의 이질감이 생기는 사례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상임위원회 임기(안)은 1991년도에 행자부에서 시달린 상임위원회 구성 준칙안에는 당초에 2년 임기로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와 용산 등 몇 개 구는 구정 체험기회의 균등 배분 등의 이유로 1년으로 한 바 있으며, 8월 23일 현재 타구를 조사해본 결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금천구를 제외한 23개 모든 구가 2년 임기로 하고 있어서 2년 임기로 수정하는 (안)이 보편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별 정수 기준은 단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泰淳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 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 질문을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됩니까?

○委員長 鄭泰淳 吳弼根議員님이 앞에 나와서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제안설명을 한 제안자니까 답

변은 제안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吳弼根議員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자료를 받아와 가지고

○委員長 鄭泰淳 吳弼根議員께서 답변을 하시고 보충할 부분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吳弼根議員께서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습니다. 진작 개정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5조 하고 부칙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5조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면서부터 바로 1년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2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도 그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1년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에는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를 안할 수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구의 개성입니다. 의원들의 의사고. 우리 종로구에서는 그 당시에 2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제가 이해를 시켜서 1년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1년으로 한 것은 정말 지방의회 의원이 선진국에는 150년 또는 100년 이상 경륜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불과 수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바람이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물의없이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吳弼根議員께서는 발의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본 위원도 이것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봤습니다. 오늘 10시에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안건이 무엇인가, 정밀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업무가 날로 대폭 증대되고 복잡 다양한 점에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위원회조례 제5조의 임기 1년을 2년으로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취지라면 본 위원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이 되시면 공부

를 안 해도 됩니다. 1년 동안 임기 동안에는 그냥 시나리오대로 사회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회자입니다. 그러나 위원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질의하고 또 감사를 하고 하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1년 동안만 위원을 하고 위원장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1년 후에 위원이 되어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려면 좀 한동안은 명하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감각이 둔화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해버리면 그 감각이 완전히 희석되어 가지고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당초에 임기를 1년으로 하자고 할 때는 의원의 인격은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지역활동이 있고 선출해주신 주민들에 대한 위상도 있는 것이고 또 개개인으로서 보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의 장으로서 도대체 남이 하는 위원장 한 자리도 못하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편견을 받기 때문에 의원의 인격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관찰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2대, 3대에 와서는 저희 3대가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주장하기를 위원장은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선 의원은 빠지겠다, 삼선 의원이 양보를 했습니다. 초선, 재선 가운데에서 해라, 그분들은 꼭 해야 될 분이고 지역구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위원장 한 자리 못하고 3년, 4년 임기를 마쳤다고 하면 위상에 막대한 손상이 가기 때문에 고루 다양한 경험을 하여 지역주민들의 어떤 위상을 인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삼선 의원들이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는데 삼선 의원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초선 의원께서 이것을 발의한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질문입니다.

○吳弼根議員 선배 의원이신 千相旭委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상임위원장단 회의 때 거론이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3대 구의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무건설위

위원회 3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 상당히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아서 상임위원회를 2년으로 하는 것이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타당할 것 같아서 본 조례를 개정했고, 또 상임위원장 선거에 있어서도 잦은 위원장 선거로 인해서 의원간에 반목과 갈등이 초래가 되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千相旭委員** 원래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안하게 되면 집행부에 질의를 하게 되어 있고 의원님이 개정(안)을 내시면 의원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안자가 吳弼根議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吳弼根議員님의 주요 답변 내용이 吳弼根議員님께서 재무건설위원회에 3년 동안 소속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3년 동안.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선거 후유증을 말씀하셨는데 선거 후유증은 이따 吳弼根議員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상임위원회 배정은 전문성을 감안해서 사무국장님이나 전문위원 등등 간부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의장이 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의 전문성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9분 의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를 하니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시민행정위원회에 배정이 되어야 맞겠죠. 본인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배정된 것이 아닙니까? 전문성을 감안한 거죠. 그리고 1년마다 바뀔 때마다 전문성을 감안합니다. 그런데 의원들간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조율하면 교체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가까운 세월을 아무 물의없이 위원회를 잘 운영해왔습니다. 저는 23개 구가 우리 구처럼 다루어 왔더라면 그 구도 훨씬 의정활동이 활성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구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마는 잘할 걸로 믿고 또 더 잘할 것이 아니냐, 저희 종로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된 것도 그런 데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專門委員 蔣昭秀** 저는 방금 제안하신 吳弼根議員님의 답변 가운데에서 보충적인 답변을 그런 보충자의 자격으로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임기 연장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제가 듣기로는 선거 후유증을 치유하자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안을 사무국에서 성안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千相旭議員님께서 당초에 준칙안을 무시하고 2년을 1년으로 하셨던 뜻은 방금 질의하셨던 그런 큰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광장을 통해서 의원님들간에 상호 활발한 논의를 하셔서 좋은 안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있고, 제2조는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제5조는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좋은 의견으로 채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질문해야 될 사항인데 그 위원회의 조례는 그 구에서 필요에 따라서 당선된 의원들의 개성이나 전문성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임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부칙에 보면 본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5조만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것도 입법이거든요. 우리도 입법기관이니까 입법 취지에는 전혀 불합치한다,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어떤 조례는 당장 시행하되 어떤 조례는 1년 후에 시행한다는 이런 것이 좀 법률 전문적으로 볼 때는 우스운 것이 아니냐,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떠한 당적으로 한다면 당리당략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욕구 충족이라든가 이런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專門委員 蔣昭秀** 거기 부칙은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는 2002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과 시행은 법률적으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고, 그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위원회 운영과 충돌이 생깁니다. 조례(안)을 개정해 버리게 되면 충돌사항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완입니다.

○千相旭委員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제3자가 볼 때 전문위원이 볼 때 또 법률 전문가가 볼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이면의 다른 목적이 있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객관적으로 솔직히 말씀해 달라는 애깁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이때까지 의원님들 대부분 제가 듣는 의견은 2년으로 하되 지금 2년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없을 내년도에는 다시 뽑히는 의원들이 하려면 다시 또 못하기 때문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이번 의원들이 다음 기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서 그 적용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한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법에서도 그런 부칙을 인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시행하되 특정조항은 언제부터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적용한 법률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전문위원에게 제가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질문하는 지나 답변하는 전문위원 두 분 다 모순이 됩니까라는 吳弼根議員님이 발의자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鄭泰淳 吳弼根議員님! 단상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 미안합니다. 吳弼根議員님! 선거후유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 조례 제5조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吳弼根議員 예,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어떤 점에서, 선거후유증이 됩니

까?

○吳弼根議員 저도 상임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 때 많은 분들이 한번 했으면 단임으로 임기를 끝내야 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욕심이 있어서 한번 더 연임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4명의 위원님들이 선거에 임하셨습니다. 정말 이천투구(泥田鬪狗)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떤 편에 서서, 전부 지지를 하고 싶었지만 어느 한 사람에게,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정말 무척 망설였습니다. 정말이지 상임위원장 선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2년간으로 함으로써 이런 반목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千相旭委員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고 피 의원의 인격과 자긍심이나 자존심은 모두 평등합니다.

○吳弼根議員 평등의 원칙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사료됩니다마는

○千相旭委員 그래서 지역구가 있는 것이고 선출해준 선거 구민이 있습니다. 구민 앞에서 똑같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자 해서 본 위원이 약 9년 전에 이것을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9년간을 시행해 왔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吳弼根議員님이 가령 임기 4년동안 위원장을 한번도 못하실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吳弼根議員 그럴 수도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3선 의원들이 여러 차례 양보했습니다. 본 위원은 10년 동안 상임위원장 한번도 못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양보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희생의 디딤돌 위에서 이러한 조례가 1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운한 것이 전문위원들이 발의해서 吳弼根議員에게 서명 받은 것으로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마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저는 吳弼根議員님이 앞장서서 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전문위원들도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시게

되면 최초로 발의했던 삼선 의원이 기라성같이 다섯 분이 계신데 한 분에게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이러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조선, 재선보다는 삼선이 낫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아니까, 우리 중로구의회에서는 삼선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한 예가 되었습니다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회주의가 실천되는 나라에서는 삼선을 인정합니다.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를 우리 사무국에서 먼저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런 조례를 상정합니까? 막으셔야지요. 조선의원이 하겠다고 한다고 올립니까?

○吳弼根議員 千相旭委員님! 진정하십시오.

(○宣相善委員 議席에서 - 運營委員長! 조용히 시키세요. 소리를 지르게 합니까?)

(○李東奎委員 議席에서 - 委員長!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자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다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시간 제한을 주시든가)

○委員長 鄭泰淳 시간은 충분합니다. 李東奎委員님! 잠깐만!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李東奎委員 議席에서 - 혼자서 일방적으로 다하고 다른 사람들도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 아니야! 혼자 해! 당신 혼자! 못해! 무슨 운영위원장이 혼자서 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혼자 얘기 다하고 말이야! 혼자 고함은 다치고 다른 사람들 의견은 왜 안 들어?)

○委員長 鄭泰淳 李東奎 幹事님! 시간은 충분하니까 드리겠습니다.

(○宣相善委員 議席에서 - 委員長!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아직 발언 끝나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鄭泰淳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千相旭委員 질문을 하다보면 집행부에, 우리 의원님에 대해서가 아니고 사무국의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들에게 제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혹시 의원들 가운데에서 우리 의회의 역사를 잘못 알고

이런 발의를 할 경우에도 이것은 최초의 초대의원들에게 전화상으로라도 물어보든가 해서 '이런 발의가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어봤어야 하는데 한번도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쑥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사무국에다 얘기한 겁니다. 위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명색이 삼선의원이 발언 중인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개편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회의 분위기를 흐트러트려 놓는 것은 李東奎委員입니다. 宣相善委員도 나가시고 이것이 위원을 대우하는 겁니까? 발언 중에 있는 위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의 인격은 동등하다고, 본 위원이 발언 중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 흐트러뜨리면 이것은 의회가 아니죠. 의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모여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의회인데 본 위원이 발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발언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발언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발언 중에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위원장께서 발언을 중지시키면 중지합니다. 저는,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발언은 여기서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鄭泰淳 예, 宣相善委員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우선적으로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고 또 회의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고 고함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회의분위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는 굉장히 삼선의원이신 千相旭委員님을 저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선, 삼선' 하시기 때문에 삼선의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매번 모든 일을 하면서 재선이니, 삼선이니, 초선이니 이것을 논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었는데 모든 것은 초선이라 할지라도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종합되어서 이것이 좋다고 의결하면 거

기에 맞춰가야지 꼭 삼선이라고 해서 맞다고 논리를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온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91년도 행자부에서 시달된 위원회구성 준칙(안)을 보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존경하옵는 千相旭委員께서 발의를 해서 1년으로 상임위원회 원구성을 했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실제로 맞지 않고 23개 구에서 2년으로 해오고 있는데 굳이 그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吳弼根議員 外 3人으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은 전혀 그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마는 저도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상임위원회를 보면 위원장 선거마다 상당한 반목과 질서가 계속되었습니다. 의원 상호간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괜히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하는 것이 잡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금 회의 분위기를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좌불안석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경륜과 연륜에서 우리 千相旭委員 같은 분이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호통을 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큰 모범을 보여주셔야죠. 저희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委員長 鄭泰淳 그 말씀은 추후에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이 일은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즉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핵심은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발의와 관련지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올린 검토보고서나 기타 관련된 서류를 보면 吳弼根議員이 맨 위에 있어서 발의한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마는 내용인 즉은 그런 내용이죠. 1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인데 우리 千相旭委員님께서 기왕에 그렇게 배려가 된 것이니까 그냥 존치를 시키자는 뜻일 것이고 그 다음에 吳弼根議員님이나 宣相善委員님 또 다른 위원님 의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2년으로 하자, 행자부의 기본준칙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서로 상대가 있는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는 '91년도에 개정되어서 1년씩 상임위원장들을 초선의원이나 재선의원들이 해오셨으니까 그냥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5조의 상임위원장 임기는 우리 기에서 개정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 넘겨주시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3대 4기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장 임기를 변경시킬 것이 아니라 다음 4대 의회에서 그 의원님들이 증지를 모아서 1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맡기자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정적인 발언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통제가 될 것이고 제2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5조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4대 의회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鄭泰淳 예, 李憲九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憲九委員 전문위원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李憲九委員입니다. 1기 구의회 구성할 때는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 1년으로 바뀌었습니까?

○專門委員 蔣昭秀 1대 때부터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행자부에서

○李憲九委員 아니, 행자부에서 2년에 한번씩 상임위원장을 하라는 것을 우리가 1년씩 하기로 한 것이 언제부터였느냐 이것이지요.

○專門委員 蔣昭秀 1대 후반기부터

○李憲九委員 1대 후반기가 아니죠. 상임위원장은 1대 때는 2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선출을 언제부터 1년씩 했느냐 나는 이것을 묻는

거죠.

○**專門委員 蔣昭秀** '91년 6월 7일부터입니다.

○**李憲九委員** 그러면 1기 때도 1년씩 했습니까? 그러면 1기 때 상임위원장을 3번을 했던 말입니까?

○**專門委員 蔣昭秀** 상임위원장 임기하고 위원 임기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李憲九委員**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기 후반기에 했으면 시행은 2기 때부터 했습니까?

○**專門委員 蔣昭秀** 그때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조례상에는 '9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1년에 한번씩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專門委員 蔣昭秀** 1대 때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千相旭委員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제가 누명을 벗겨야 하겠습니까. 지난 상임위원장 선거 직후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상호간에 위원들이 서로 불신도 하게 되고 질시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鄭聖洙 專門委員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임시회 때 상임위원장 선거를 애초의 본뜻대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례(안)을 검토해봐라 해서 제가 이것을 그 당시에 鄭聖洙 課長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것은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吳弼根 委員長뿐만 아니고 여러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千相旭委員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라서 차라리 그 당시에 제가 千相旭委員님이나 아니면 삼선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이것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왜그러냐 하면 3기에 와 가지고 삼선의원들이 양보를 하시는 바람에 재선, 초선의원들이 한 분씩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3대 2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3대 3기부터 이것이 비뚤어져 나가다가 결국엔 한 분이 상임위원장을 못하

는 결론이 나왔고 또 본 위원이 상임위원장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저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하게끔 안을 세워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千相旭委員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를 자주하다 보니까 후유증이 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어떤 선거나 선거를 하게 되면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나라 국민성은 이상하게도 선거가 축제가 아니고 선거가 하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으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면 내년에 또 1년씩 하자고 할 것이니까 차체에 우리가 이것을 2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작은 마음으로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제가 상임위원장 1년을 했고 이제 2년째 들어가는데 상임위원장을 하다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돼요. 어느 의원은 질의 같지 않은 질의를 하는 의원도 계시고 어느 분은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의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전문성 결여라는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 결여라고 제가 사료되고 위원님들은 상임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조례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千委員님께서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오해를 하셨는데 이상하게 이것을 제가 제안설명을 했으면 제가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 吳弼根 委員長님은 어제 못 나오셨죠? 오늘 처음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고 답변을 하게 되다보니까 저와 마찬가지로 미리 머리 속에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당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제 해명성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鄭泰淳** 제안자이신 吳弼根議員님은 단

상에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李東奎委員 議席에서 - 제안자가 필요했을 때 나와달라고 해야지 위원장님은 아무 때나)

○委員長 鄭泰淳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먼저 신청한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4기에 들어와서 첫 회의인데 좀 삭막한 것 같습니다. 당초의 원 구성은 '91년도 행자부 지침 구성 준칙에 의해서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千相旭委員께서 방금 하신 말씀과 같이 의원의 평등권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의원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상임위원장 한번이라도 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의 의미가 좀 퇴색된 것 같습니다. 방금 李憲九委員 말씀대로 3기에 와서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서로 끌고루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씩 선배의원들이 양보를 해서 후배의원들이 상임위원장 한번이라도 끌고루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누구를 지켜주지 못한 삼선의원들도 역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끌고루 하기 위해서 했으면 의총이라도 열어서 한번 하는 사람은 두번 못하게끔 서로간 토의라도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텐데 한번 틀이 깨지다보니까 선거후유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千相旭委員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듣기가 거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평등권을 가지고 어떤 조례(안)을 개정이나 제정할 때는 의회 회의장에서 상정해서 토의를 행하게 되는데 우리 千相旭委員님이 1년으로 발의를 했다고 해서 삼선의원인 千相旭委員한테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올렸다고 호통을 치셨는데 이것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모두 평등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어떤 의안이든지 꼭 발의한 사람한테 의논해서 개정하거나 수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

겠는가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아까 李憲九委員님 말씀이나 安載弘委員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1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시나리오를 갖고 회의를 주재한다고 하지만 아까 李憲九 선배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려면 더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安載弘委員은 이번 임기에서 이것을 개정하지 말고 다음으로 넘기자고 그러는데 다음으로 넘기면 또 마찰이 일어나니 이번에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타구와 비교해서 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泰淳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 幹事님! 말씀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고향을 쳐서 죄송합니다마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웠던 것은 다른 부분보다 조선의원은 삼선의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몹시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선의원뿐만 아니라 재선의원한테도 알려야죠. 왜 삼선의원한테만 알려야 됩니까? 조금 전에 우리 丁炳煥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총을 열어서라도 선배의원들께서 평소에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들한테 예의도 갖추어드리고 그러는데 그 어른들께서 그렇게 이끌어주시지 못할망정 그런 공개된 석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조선의원들은 왜 삼선의원들한테 알리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들어 놓으셨어도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의안을 내놓아서 거기서 토론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제로 올라왔으면 이리이러한 부분이 합당치 못하니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자든가 기존대로 두자든가 이렇게 안을 내놓으셨으면 좋은데

고함을 치시고 막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짧은 기분에 고성어 나왔습니다. 그 점 사과를 드리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회의가 진행될 때는 물론 처음 올라오시다 보니까 아직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회의를 끌고루 대화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배분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건의 드리고 꼭 그 점을 지켜 주시고요. 지금 현 안대로 올라온 제5조에 대해서는 조금 李憲九委員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洪起瑞議員님이나 여러 분들이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음에 4대로 넘겼을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참 문제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한 말씀 드리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는 발견한 것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면 꼭 의장이나 부의장 선출할 때 그것을 악용하더라 말입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이, 그렇게 악용의 소지가 있고 두번째로 상당한 예산이 많이 나가더라 말입니다. 선거를 한번씩 치를 때마다 왜 상임위원장이 2년으로 되어 있으면 쉽게 말해서 두 번이면 끝날 것을 4년이면 4번이 되다보니까 전부 기구표도 바뀌어야 되고 인쇄도 다시 해야 되고 수첩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예산이 많이 나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합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의장이나 부의장직으로 의장단 선출할 때 똑같이 의장단이기 때문에 2년으로 못을 박아서 의장단을 선출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제가 사무국장한테도 여쭙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리고 의원들 간의 이질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것이 합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올려달라 그래서 의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千相旭 대선배님께서 고함을 치시니까 저희들도 고함을 쳤는데 사실 초선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갔으면 기분이 안 나겠

습니다. 특하면 초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초선들 다 빠질 테니까 삼선들만 여기 들어오셔서 회의하셔야 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고성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있게 토의를 하셔서 가지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것을 속기록에 안 남게 약간만이라도 정회를 하셔서 가지고 위원끼리 토의를 하신 다음에 속개를 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鄭泰淳 정회를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時02分 會議中止)

(11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泰淳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 幹事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李東奎委員 지금 이제까지 올라온 종로구의회 상임위원의 임기 각 상임위원회 임기를 선포되는 날로부터 2년으로 재임한다는 개정(안)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뜻과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올리니까 여기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鄭泰淳 예, 千相旭委員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 李東奎 幹事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개의안을 제출합니다. 개정(안) 제2조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5

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참여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장을 골고루 경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해서, 또 두번째는 모든 구정업무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하려면 각 분야의 25개 과의 다양한 과의 경험을 의원님들이 고루 체득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 자기 적성에 맞도록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또 전문성을 감안해서 배정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9년 동안 운영해온 결과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이렇게 사료되므로 제5조에 대해서만은 부결할 것을 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泰淳 千相旭委員으로부터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말씀하십시오.

○安載弘委員 수정동의안 중에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제5조하고 부칙인데요 부칙의 내용에 보면 제5조는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千相旭委員님의 수정안에 이 내용도 동시에 삭제되는 안이 채택되어야 된다는 안에 재청합니다.

○千相旭委員 제가 재개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委員長 鄭泰淳 千相旭委員의 개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委員 있음)

安載弘委員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千相旭委員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해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千相旭委員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님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千相旭委員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時23分)

○出席委員 9人

鄭泰淳 李東奎 李憲九 千相旭  
安載弘 丁炳煥 朴鍾植 吳弼根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鄭聖洙